

관세청 고시 제2022-48호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2-40호, 2022.7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2년 10월 6일

관 세 청 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칙 <관세청고시 제2022-48호(2022.10.6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연번	고시번호(시행일)	품 명	비고
500	2022-48호('22.10.6)	Mung bean, frozen 등 2건	610
501	2022-48호('22.10.6)	세포벽추출물(GCW) 등 2건	611
502	2022-48호('22.10.6)	HV 단자 등 2건	612
503	2022-48호('22.10.6)	Wood sawn 등 2건	613
504	2022-48호('22.10.6)	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	614

## 500. Mung bean, froze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2-48호 (2022.10.6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Mung bean, frozen; PR.CHNA	품목분류2과-4543 (2018.07.04.)
2	Mung bean, cooked, frozen ; 냉동 찐녹두;; VIETNAM	품목분류과-103808 (2005.04.12)

### ○ 물품설명

-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녹두(Vigna속)를 물에 담근 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(식용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0710.22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0713.31-9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신선 녹두를 냉동한 것이 아닌 건조 상태의 녹두를 물에 담근 후 냉동한 것이므로 제0713.31-9000호에 분류(제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 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01. 세포벽추출물(GCW)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2-48호 (2022.10.6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Feed preparation ; GCW(Great Cell Walls)	품목분류2과-9938 (2016.08.02)
2	Feed preparation ; Agrimos	품목분류2과-17796 (2016.12.02)

### ○ 물품설명

- 효모를 자가분해 후 세포벽 성분만을 분리하여 만든 미황색계 분말의 세포벽 추출물로,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( $\beta$ -글루칸 25%, 만난 24%, 단백질 30% 등 함유)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### 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2309.90-9090호

### 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309.90-2099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보조사료의 일종이므로 제2309.90-2099호에 분류(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02. HV 단자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2-48호 (2022.10.6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Other parts of ignition coils; HV단자; IC312001	품목분류2과-2974 (2015.05.04.)
2	단자; STUD	품목분류1과-518 (2015.04.20.)

### ○ 물품설명

- 차량용 스파크 플러그 끝단에 위치하여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전압을 전극으로 전달하는 기능의 1000V 이하의 전기단자  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11.90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536.90-909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플러그와 점화코일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자 (terminal)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 8536.90-9090호에 분류(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 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03. Wood sawn 등 2건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2-48호 (2022.10.6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Wood sawn; Rubber wood finger joint board	품목분류4과-8706 (2021.11.08.)
2	Wood sawn; 태권도 수련용 보드	품목분류2과-1914 (2015.03.26.)

### ○ 물품설명

-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측면을 접합한 가구 제조용(핑거 조인트된 것) 또는 태권도 수련용의 목제품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①제4407.29-9000호, ②제4407.99-901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4421.99-900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일정 길이로 절단한 제재목의 측면을 접합한 목제품으로 건축용이 외의 것이므로 제4421.99-9000호에 분류(2022년 제7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## 504.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2-48호 (2022.10.6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전 공문
1	GMR Based Crank Shaft sensor; TLE5027C,9422000104	품목분류3과-3168 (’17.06.21.)
2	TLE5028CBGMRICBOX,9422000418	품목분류3과-3167 (’17.06.21.)
3	SENSOR IC, A1688LUBN-T	품목분류3과-478 (’16.02.16.)
4	Differential Two-Wire Hall Effect Sensor IC ; TLE4941C	심사정책과-100032 (’06.02.28.)

### ○ 물품설명

- 모노리식 집적회로(IC)와 적층세라믹 콘덴서(Multi Layer Ceramic Capacitor)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의 자기저항(Magnetic esistance) 센서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①~③제8543.70-9090호, ④제8543.89-909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9031.80-9090호

### ○ 변경사유

- 집적회로(IC)와 콘덴서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로, 회전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90류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9031.80-9090호에 분류(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